



NANCY BARGMANN
부서장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국

발달장애서비스부

1215 O Street, Sacramento, CA 95814

www.dds.ca.gov



GAVIN NEWSOM
주지사

2023 년 12 월 01 일

수신: 리저널센터 사무장

제목: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HCBS) 최종 규정: 모니터링 및 시정 조치

본 지침은 이 주제에 관한 2023 년 11 월 22 일 지침을 대체합니다.

복지제도법 4685.10 절에 따라 발달장애서비스부(이하 '부서')는 리저널센터가 HCBS 적용에 대한 연방 요구 사항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지침을 발행합니다. 본 지침의 목적은 a) 필수 현장 점검을 완료하기 위한 모니터링 일정을 수립하여 모든 HCBS 적용에 규정 준수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정책의 이행이 HCBS 적용 요건을 준수하며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b)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기존 서비스 제공자를 처리하는 단계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리저널센터는 2024 년 8 월 31 일까지 모든 HCBS 적용(붙임 서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하여 HCBS 적용 요건을 완전히 준수하고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중 리저널센터는 모든 관련 [연방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 평가 도구를 포함한 교육 및 정보는 <https://www.dds.ca.gov/initiatives/cms-hcbs-regulations/assessment-inform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저널센터가 다른 도구를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리저널센터 웹사이트에 해당 도구를 게시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방문 시 예상되는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방문 시 발견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위반 영역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비스를 받는 개인의 의견을 구하고, 연방 요구 사항 및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에 대한 직원 교육 및/또는 훈련을 완료하고, 연방 요구 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충되는 문서를 업데이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시정 조치

모니터링 방문 당시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연방 HCBS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주거 시설에 대한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 17 장 56056 절](#)(서비스 제공자 이의제기 권리 조항 포함)의 시정 조치 계획(CAP: Corrective Action Plan) 절차에 따라 추가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리저널센터는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 점검 결과가 나온 후 영업일 기준 10 일 이내에 서면으로 CAP 를 작성 및 전달해야 합니다. CAP 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면 CAP 에는 다음 사항이 모두 명시되어야 합니다.

- (1) 연방 요구 사항 위반이 확인된 서비스 제공자가 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서비스 제공자가 CAP 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행될 수 있는 제재 조치에 대한 정보.
- (2) 해당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과 검토 및 논의를 비롯해 서비스 제공자가 점검 결과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 (3) 서비스 제공자가 확인된 위반 사항을 개선해야 하는 기간(리저널센터와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개선하는 데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서면 CAP 가 발행된 날로부터 30 일을 초과할 수 없음).

서비스 제공자는 CAP 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리저널센터에 서명 및 날짜가 기재된 CAP 를 반송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CAP 를 발행하는 리저널센터는 서비스 제공자 및 해당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과 관련된 다른 리저널센터에 서명된 CAP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는 늦어도 2024 년 9 월 30 일까지 모든 CAP 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재 조치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CAP 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리저널센터는 단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합니다.

- (1) 필요한 시정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에 대한 신규 추천 및 승인을 즉시 중단합니다.
- (2) 해당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개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만나 상황을 논의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안 옵션을 제안합니다.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위임 대리인은 원격으로 리저널센터와 논의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치를 취한 후에도 서비스 제공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리저널센터는 제공된 서비스 대금의 50%를 임시 지급 보류해야 합니다. 임시 지급 보류 조치는 리저널센터가 서비스 제공자의 CAP 준수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유효하며, 보류된 대금은 확인 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됩니다. 임시 지급 보류 기간은 서비스 제공자가 CAP 를 계속 준수하지 않는 경우 리저널센터가 서비스 제공 종료를 동시에 추진하지 않는 한 4 개월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습니다.

리저널센터 사무장
2023 년 12 월 01 일
3 페이지

리저널센터는 리저널센터가 a) 임시 지급 보류 및/또는 b) 서비스 제공 계약 종료를 추진하는 서비스 제공자 목록을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통지는 CAP 를 발행하는 리저널센터에서 해당 제재 조치 이행 후 10 일 이내에 부서 이메일(hcsregs@dds.ca.gov)로 보내야 합니다. 리저널센터는 또한 임시 지급 보류 또는 서비스 제공 계약 종료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하며, 각 조치가 발효되는 날짜를 포함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 이의제기

서비스 제공자가 HCBS 연방 요구 사항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다는 리저널센터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리저널센터의 위반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 리저널센터 사무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HCBS 규정 준수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이의제기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집, [제 17 장 54380 절](#)에 설명된 것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링 활동 및 규정 준수 데이터를 부서에 보고하는 리저널센터에 대한 지침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리저널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으로 본 서신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서비스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 리저널센터는 hcsregs@dds.ca.gov 로 문의해 주십시오. 서비스 제공자는 1 (833) 396-4337 번을 통해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본 서명자:

VICKI L. SMITH, Ph.D.
부사무차장(Deputy Director)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과

붙임 서류

cc: 다음 페이지 참조.

리저널센터 사무장
2023 년 12 월 01 일
4 페이지

cc: 리저널센터 관리자(Regional Center Administrators)
 리저널센터 고객 서비스 디렉터(Regional Center Directors of Consumer Services)
 리저널센터 커뮤니티 서비스 디렉터(Regional Center Community Services Directors)
 리저널센터 HCBS 프로그램 평가자(Regional Center HCBS Program Evaluators)
 리저널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연합(Association of Regional Center Agencies)
 주 발달장애인 협의회
 Nancy Bargmann, 발달장애서비스부
 Brian Winfield, 발달장애서비스부
 Carla Castañeda, 발달장애서비스부
 Jim Knight, 발달장애서비스부
 Ernie Cruz, 발달장애서비스부
 Suzy Requarth, 발달장애서비스부
 Susan Crow, 발달장애서비스부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적용

- 성인 주거 시설
- 특별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성인 주거 시설: DSS 허가를 받은 전문 주거 시설
- 인증 가정. 위탁 가정
- 아동 보육 시설. 아동 보육 센터
- 아동 주거 시설. 그룹 홈. 위탁 가정. 소규모 가족 주택.
- 주간형 서비스(활동 센터, 성인 주간 보호 시설, 성인 발달 센터, 행동 관리 프로그램, 커뮤니티 기반 교육 제공자 사회화 훈련 프로그램. 커뮤니티 통합 교육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서비스)
- 행동 개선 지원 주택(EBSH) 및 커뮤니티 위기 가정(CCH)
- 패밀리 홈 에이전시: 성인 가정/가족 교육 가정
- 주거형 노인 요양 시설
- 지원 고용(그룹 서비스)
- 근로 활동 프로그램

